먹거리기본법안 (전종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511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전종덕·이수진·백선희

주철현 · 임미애 · 송재봉

서미화 · 김종민 · 이병진

송옥주·신장식·천하람

한창민 · 정혜경 · 김재원

윤종오 의원(16인)

제안이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 및 소비체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 이상기온 등 기후변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식량 보호주의의 확산 등으로 인해 국제 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식량주권 강화를 위한대책 마련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이에 먹거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 규정과 절차를 통합적으로 정립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먹거리 기본 정책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안

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먹거리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적정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 함(안 제7조).
- 라.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먹거리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9조).
- 마.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보급하고,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13조).
- 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둠(안 제15조).

사.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관련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8조).

먹거리기본법안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 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① 이 법은 먹거리 공공성에 기반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먹거리 기본 권 보장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 1. 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의 자급능력 향상
 - 2.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건강하고 안 전한 먹거리 보장
 - 3. 생태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지원

- 4. 먹거리에 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통과 독점거래의 방지
- 5. 지역에 기반을 둔 먹거리 보장 체계의 구축
- 6. 먹거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민관협력 추진체계의 구축과 운영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먹거리"란 농·수·축산물이나 이를 원료로 가공한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품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2.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국민이 자신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 요한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장 받을 권리를 말한다.
 - 3. "먹거리 공공성"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먹거리의 생산, 공급 및 소비에 관한 문제를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4.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주된 목표로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5. "식량주권"이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공급, 소비에 관한 결정을 농어민과 소비자가 자주적이고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6. "먹거리 접근권"이란 모든 국민이 사회적·경제적 상황과 관계없이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7. "공적 먹거리"란 국민의 생애주기에 따른 공공급식,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 급식과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먹거리, 그 밖에 공동체 기반 활동을 통하여 제공하는 먹거리 등을 말한 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정책의 모든 부문에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이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적정 재원의 확보와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제정하고 공적 먹거리 보장이 필요한 국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5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의하여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

- ② 모든 국민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타인의 먹거리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윤리적인 생산과 소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먹거리 보장 등

- 제7조(먹거리 보장의 수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거나 소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을 정하여야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적 상황 및 먹거리 취약계층의 여건 등 을 고려하여 공적 먹거리의 공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공적 먹거리 공급기준 등을 고려하여 공급대상, 공급가액 등 공적 먹거리의 공급수준을 결정

하여야 한다.

제8조(식량주권에 기반한 먹거리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의 농어업을 유지·발전시킴으로써 식량주권에 기반한 국민의 먹거리 보장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9조(국가먹거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 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먹거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 2.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 3. 기본계획의 성과 및 평가
 - 4.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 5.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 6.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 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5조

- 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방법과 절차,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요청할 수 있다.
 - ③ 국무총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15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한다.
 -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를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등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이하"분석·평가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국무총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이 지정 기준이나 지정 조건을 위반하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⑥ 국무총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부터 정책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분석·평가지원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지원 및 자문에 응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추진실적의 제출 및 분석·평가, 분석·평가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 국무총리는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12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제15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점 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게 기본계획의 수정·보 완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3조(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평가) ① 국무총리는 먹거리 기본 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② 제15조에 따른 국가먹거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표에 따라 매년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제12조에 따른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종합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의 작성, 평가 및 평가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과 정책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먹거리 정책의 총괄·조정

- 제15조(국가먹거리위원회) ① 국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과 관련 계획 및 그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 총리 소속으로 국가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 3. 법령 및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에 관한 사항
- 4.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평가에 관한 사항
- 5. 먹거리 기본권 보장 평가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6.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7. 먹거리 관련 국내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상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③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 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여성가족 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차지단체의 장

-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수산업단체·축산업단체·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식품산업단체·시민사회단체·학계·언론계 등을 대표하는 사람 2. 먹거리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기관·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대표의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사무국을 둔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시·도먹거리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주요사항 및 그 밖에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먹거리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시·도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먹거리 관련 분야를 대표 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시·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8조(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① 국가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먹 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의 확대를 위한 사업
 -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 3.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③ 그 밖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시·도먹거리지원센터) ① 시·도지사는 먹거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먹거리지원센터(이하 "시·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시·도지원센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도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 먹거리 정보의 보급 및 국내외 협력

- 제20조(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 ① 국가는 먹거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고, 모든 국민이 해당 지식·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무총리는 먹거리 지식·정보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에게 먹거리 공공성 현황조사를 의뢰할 수있다.
- 제21조(실태조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연구를 실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여야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국무총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24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모범이 되는 관계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